

주택건설사업자

■ 업무내용

분양주택 건설사업 :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

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

임대주택 건설사업 : 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

■ 등록기준

2026.09.08 시행 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3억원 이상	6억원 이상

※[건설산업기본법]에 의한 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자본금, 기술인력 중복인정

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1인 -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.경력자(초급이상)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15~20일 이내 소요